

행정명령(EXECUTIVE ORDER)

BROOME, CHENANGO, CLINTON, DELAWARE, ESSEX, FRANKLIN, HERKIMER, MADISON, MONTGOMERY, NIAGARA, ONEIDA, OTSEGO, SCHOHARIE, ST. LAWRENCE, TIOGA AND WARREN 카운티 내의 일부 학군의 재산세 납부 기간 연장

2013년 6월 27일 이후 심각한 폭풍 및 홍수로 인해 Broome, Chenango, Clinton, Delaware, Essex, Franklin, Herkimer, Madison, Montgomery, Oneida, Otsego, Schoharie, St. Lawrence, Tioga 및 Warren 카운티(총칭해서 “6월 27일 홍수 피해 카운티”)와 Niagara 카운티 (6월 27일 홍수 피해 카운티와 함께 “홍수 피해 카운티”) 내의 대중 교통과 공익 설비 서비스가 파손되었으며 공공 보건과 안전 시스템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2013년 6월 28일, 본인은 6월 27일 홍수 피해 카운티에 재난 비상 사태를 선포하기 위해 행정 명령 103호를 발령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7월 15일, 본인은 Niagara 카운티에 재난 비상 사태를 선포하는 행정 명령 108호를 발령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수 피해 카운티에 대한 2013년도 학군의 재산세 납부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이 날, “해당 재산세 납부 마감일”). 그리고

홍수를 발생시키고 주택, 아파트 및 소상공업을 포함한 공공 재산 및 민간 재산을 파괴하고, 나무에도 피해를 주고 쓰러뜨리고, 도로를 유실하게 만든 이 사건은 보건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여, 가정들이 '해당 재산세 납부 마감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세법 제925-a조는 주지사에게 주 재난 비상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카운티, 시, 타운, 빌리지 또는 학군의 CEO가 요청할 경우 그러한 세금을 이자 또는 벌금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기간을 현재 그러한 세금이 도래된 첫날로부터 최장 21일까지 소급 연장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주지사 사무소는 홍수 피해 카운티에 속한 Clinton 카운티 - AuSable Valley Central 학군; Essex 카운티 - Elizabethtown-Lewis Central 학군 및 Moriah Central 학군; Montgomery 카운티 - Fort Plain Central 학군을 대신해 이러한 연장 요청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수 피해 카운티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겪게 될 어려움을 고려해서 이러한 연장이 특별히 보장되므로;

본인 **ANDREW M. CUOMO** 뉴욕주 지사는 부동산세법 제925-a조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홍수 피해 카운티에서의 '해당 재산세 납부 마감일'에 내야 하는 재산세를 이자 또는 벌금 없이 납부하는 기간을 해당 세금을 현재 그러한 세금이 도래된 첫날로부터 21일까지 소급 연장합니다.

이천 십삼년 시월 칠일 Albany시에서 내게 주어진

권한 및 주 인증의 권한에 의함.

주지사

주지사 비서